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907

발의연월일: 2025. 2. 5.

발 의 자:이종배·김성원·성일종

김위상 · 김미애 · 김소희

김형동 · 조배숙 · 서천호

김예지 • 박덕흠 • 신동욱

김용태 · 진종오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폐업·사망, 질병·부상 원인 퇴임, 회생파산 등의 급박한 생계위협 및 위기상황으로부터 생활 안정과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소기업·소상공인공제사업을 관리·운용하고 있으며, 현행법은 그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제금 지급 사유 발생 후 3년 내에 공제금 지급 청구를 하지 않아 미지급된 공제금이 상당수 누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특히 소상공인은 폐업 후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아 공제금 청구 안내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2024년 11월 말 기준 미지급 가입자 2만 1,896명 중 절반 이상인 1만 1,179명이 연락두절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미지급금 규모가 1,840억원에

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소재 파악, 신청안내·통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부분의 공제회 청구권 소멸시효가 5년인 것을 감안해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도 동일 수준으로 조정하며, 일정 조건 하에 소멸시효를 일시중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제금 지급률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8조의4및 제121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상여부 확인"을 "대상여부 확인"을 "대상여부 확인 및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소재 파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전 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전화번호
- ⑤ 중앙회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전화번호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공제금 지급 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제4호에 따른 전화번호 요청, 제2항에 따른 제공 절차·방법 및 제5항에 따른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제5절에 제1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1조의2(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 제106조의2에도 불구하고 소기업

- ·소상공인공제에 관한 공제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제35조의3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② 중앙회가 공제금 지급 신청 안내 또는 통지 등을 하는 경우 그 안내 또는 통지 등은 공제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을 가진다.
- ③ 제2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공제금 신청 안내 또는 통지 등에 의한 신청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공제금 청구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제3조(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관한 공제금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공제금 청구권을 가진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8조의4(자료 제공의 요청) ①	제118조의4(자료 제공의 요청) ①
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공	
제와 관련하여 가입자의 자격	
확인, 공제금의 지급과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대상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다	대상여부 확인 및 공제금 지급
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대상자의 소재 파악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	
공 요청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
	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
	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
	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
	사업자(이하 "기간통신사업
	자"라 한다): 공제금 지급 대
	<u>상자의 전화번호</u>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⑤ 중앙회는 제1항제4호에 따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라 전화번호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공제금 지급 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전 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⑥ 제1항제4호에 따른 전화번호 요청, 제2항에 따른 제공 절차·방법 및 제5항에 따른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1조의2(공제금 청구권 소멸 시효) ① 제106조의2에도 불구 하고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관한 공제금 청구권에 대하여 는 제35조의3을 준용하지 아니 한다. 다만, 해당 청구권은 5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② 중앙회가 공제금 지급 신청 안내 또는 통지 등을 하는 경 우 그 안내 또는 통지 등은 공 제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③ 제2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

시효는 공제금 신청 안내 또는통지 등에 의한 신청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